

#붙임 1

금 곡 구 역 도 시 개 발 사 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17. 04.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1.1.1 계획의 목적

- 지역적 입지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 계획지구는 김포시와 인접한 인천광역시 서북측 관문지역으로 검단1·마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마전택지지구 및 검단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새로운 도시축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임.
 - 지하철 2호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나 현재는 군부대와 연접되어 있고 지방도 305호선을 따라 기계, 금속공장들이 산재되어 영세제조업체의 이전 및 정비로 주거와 산업시설의 입지적 상충 완화 등으로 도시정비 필요
- 미래 지향적인 도시공간 조성
 - 주변 검단1·마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검단신도시, 주변 광역교통망계획 등에 따른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계획적 개발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주공간 조성
- 인천광역시 서북부 관문지역으로서의 상징성 제고
 - 계획지구는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주변 개발지와의 자연스러운 도시공간구조 형성을 통해 인천광역시 서북부지역 관문으로서의 지역 이미지 제고
-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증진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
 - 친환경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여 풍부한 공원녹지 및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친환경 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 실현가능한 단지조성
 - 상위·관련계획 및 주변 개발여건과의 조화 도모와 생활편익시설 및 공공시설의 합리적 배치로 도시환경의 “질” 제고

1.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별표 2]의 “2. 개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표 1.1.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 발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1.3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내용을 공개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1.4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가. 추진경위

- 2016. 04. 14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접수(서구 도시개발과)
- 2016. 04. 22 ~ 05. 04 : 관계기관(부서 등) 협의
- 2016. 05. 04 : 협의의견 통보
- 2016. 05. 10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보완 제출
- 2016. 05. 24 : 수용통보
- 2016. 05. 25 : 주민공람용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
- 2016. 05. 30 ~ 06. 13 : 주민공람
- 2016. 06. 24 :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6. 07. 22 :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 인천시 제출
- 2017. 03. 16 ~ 03. 26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서면심의)
- 2017. 04.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나. 향후계획

- 2017. 05.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공람 예정
- 2017.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보고서 작성 및 협의 예정

1.2 계획의 개요

1.2.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6년
- 목표년도 : 2019년

1.2.2 공간적 범위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158-6번지 일원
- 면 적 : 565,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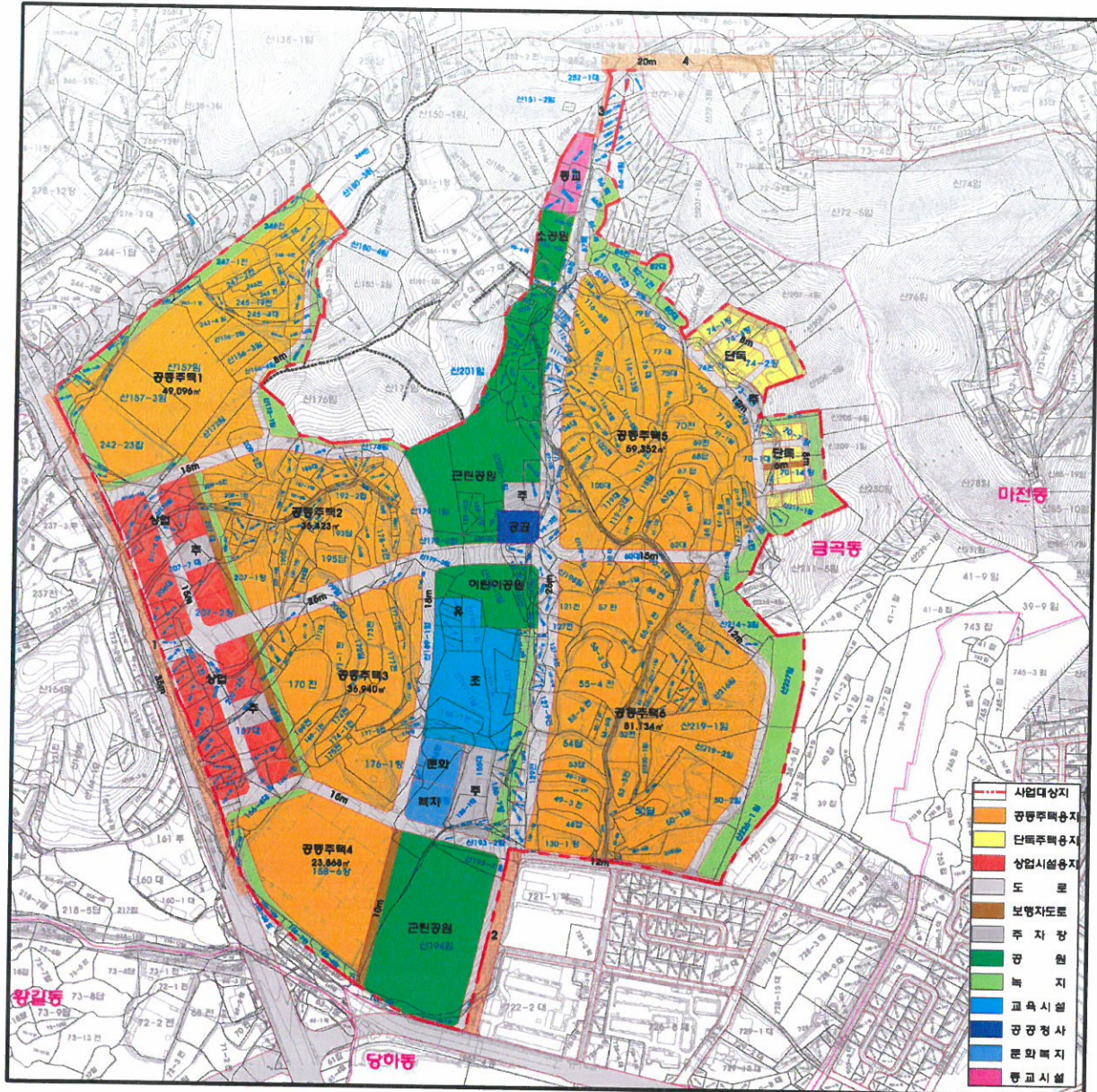
1.2.3 주요 계획내용

- 계 획 명 : 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 (가칭)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승 인 권 자 : 인천광역시

◦ 토지이용계획

〈표 1.2.3-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65,477	100.0	-
주거용지	297,669	52.6	-
단독주택용지	11,856	2.1	30 획지
공동주택용지	285,813	50.	6개 블록
상업용지	25,701	4.5	-
일반상업용지	25,701	4.5	-
도시기반시설용지	238,807	42.3	-
도 로	83,338	14.7	-
보행자도로	5,832	1.0	-
주차장	10,582	1.9	-
공원·녹지	114,650	20.3	-
공 원	63,288	11.2	근린공원2, 어린이공원1, 소공원1
녹 지	51,362	9.1	-
교육시설	17,000	3.0	초등학교1, 유치원1
공공청사	2,000	0.4	동사무소
문화시설	2,796	0.5	-
복지시설	2,609	0.5	-
기타시설용지	3,300	0.6	-
종교시설	3,300	0.6	-
구역 외 도로	16,577	2.9	-
1	8,448	1.5	-
2	3,526	0.6	-
3	407	0.1	-
4	4,196	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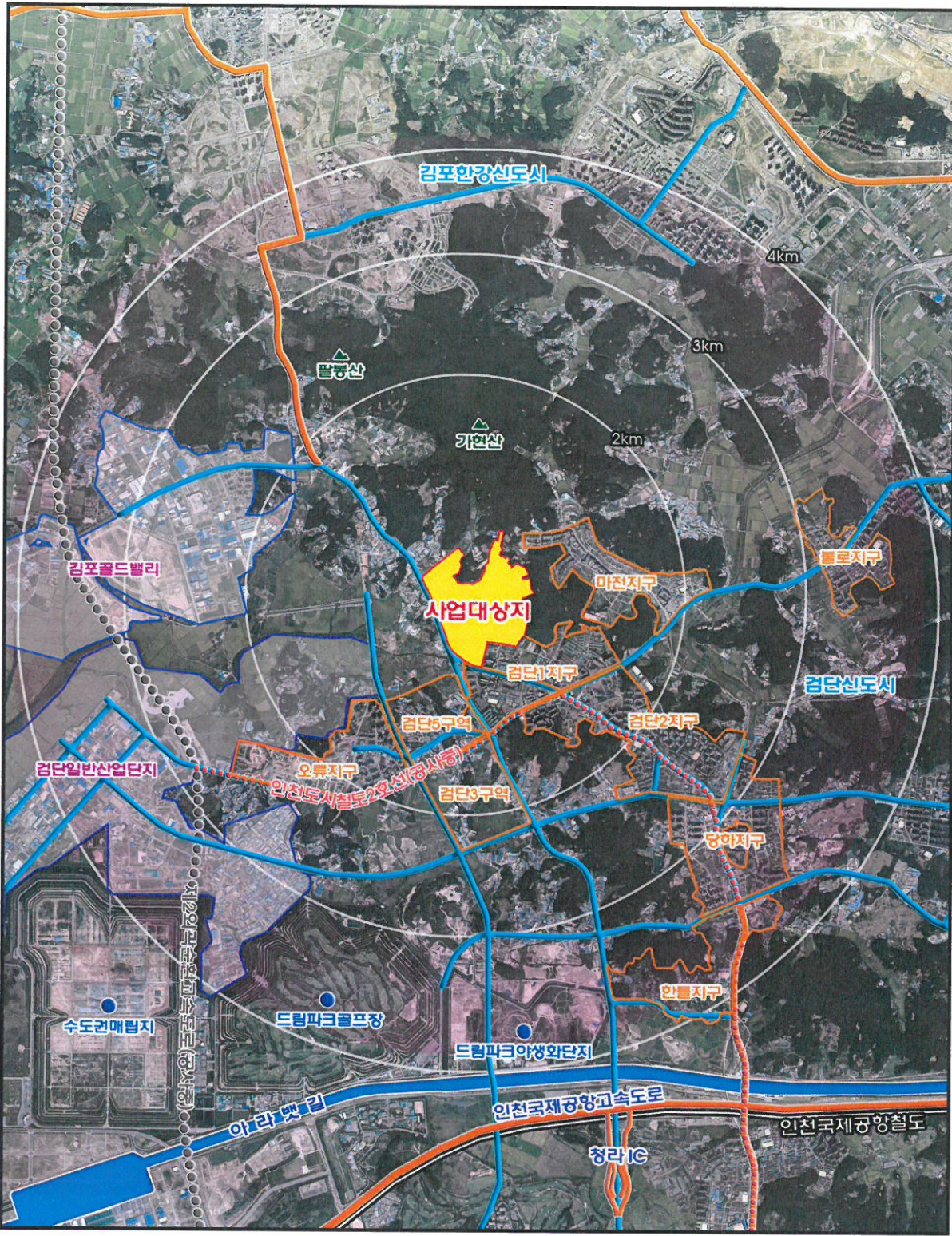


(그림 1.2.3-1) 토지이용계획도

◦ 인구 및 주택계획

〈표 1.2.3-2〉 인구 및 주택계획

구 분	면 적		세대수 (호)	인구수		비 고
	m ²	%		인	%	
합 계	297,669	-	5,170	13,029	100.0	2.52인/세대
단독주택	11,856	-	30	76	0.6	-
공동주택	285,813	100.0	5,140	12,953	99.4	-
60㎡이하	118,298	41.4	2,600	6,552	50.3	주택보급률 100% 이상 시도는 배분기준 예외
85㎡이하	142,335	49.8	2,208	5,564	42.7	
85㎡초과	25,180	8.8	332	837	6.4	



(그림 1-1) 위치도

제2장 대상지역 설정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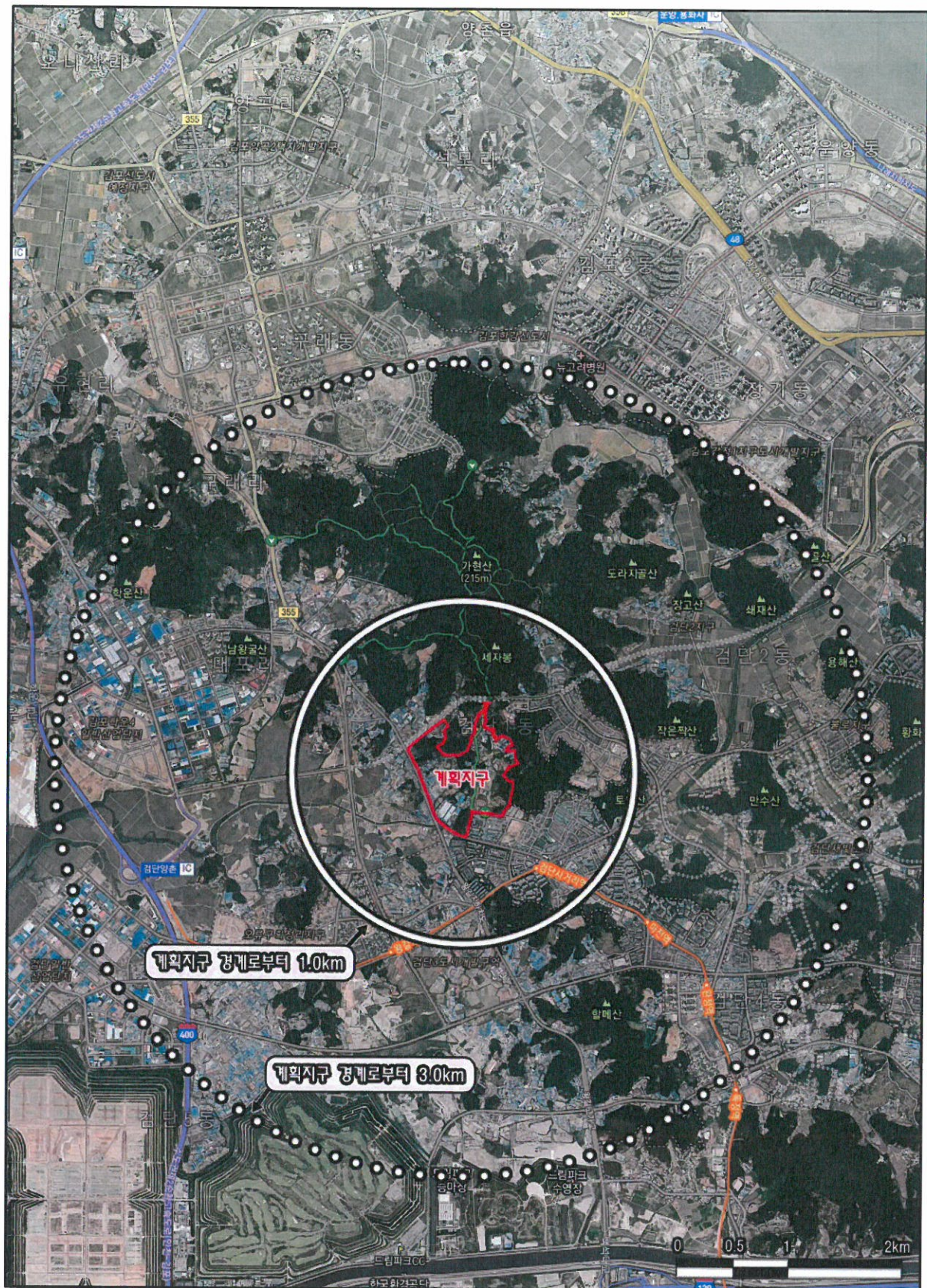
- 본 계획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는 사업이며, 본 계획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음.
- 평가항목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1호)」에 제시된 평가항목별로 검토하였음.

〈표 2.1-1〉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사 유	평가대상지역 범위
1) 계획의 적정성		-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계획수립 전·후 비교를 통한 대안설정으로 최적의 계획안 수립 필요	• 계획지구가 속한 지역
2) 입지의 타당성		-	-
가)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계획시행시 동·식물상의 분포 상태 및 서식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 예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km 이내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계획수립에 따른 지형 및 생태축 영향 예상 • 공사시 토공작업으로 인한 지형 변화 예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경관)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예상	• 계획지구 및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km 이내
	수환경의 보전 (수질)	• 계획수립에 따른 수질환경 영향 예상 •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로 주변수계 영향 예상 • 운영시 생활오수 발생으로 인한 영향 예상	• 계획지구 및 인근 수계

〈표 계속〉 환경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사 유	평가대상지역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 기	- 공사시 토사운반 및 작업장비 가동에 따른 대기영향 예상 - 운영시 연료사용 및 교통량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영향 예상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km 이내
		악 취	계획지구 주변 악취발생원에 따른 운영시 악취영향 우려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km 이내
		토 양	공사장비 폐유발생 등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진동	- 공사시 작업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예상 - 운영시 차량통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영향 예상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 이내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작업장비 및 인부 투입 등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예상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예상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온실가스	공사장비 및 운영시 난방 및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영향 예상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환경 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 검토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 편입 등 토지이용 변화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인구·주거		계획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주거 변화	계획지구 내



(그림 2.1-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제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3.1 평가항목 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환경 항목별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사업계획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표 3.1-1〉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사 유
1) 계획의 적정성			-	-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계획지구가 속한 지역	• 본 계획 및 상위계획 자료 분석 • 계획비교 대안 설정·분석	• 계획 수립 전·후에 따른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검토
2) 입지의 타당성			-	-	-
가)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동·식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km 이내	• 문헌자료,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 각 분류군별 현지조사 후 영향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변화
	서식지 보전	자연 환경 자산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km 이내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 환경자산의 영향 및 변화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설계보고서 활용	• 학술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영향여부 검토 • 지형변화, 토사유출 및 비옥토 유실 등 영향발생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경관)		• 계획지구 및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km 이내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예상
	수 환경의 보전	수질	• 계획지구 및 인근 수계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문헌자료에 제시되어있는 원단위 적용 및 산정식 활용	• 토사유출 및 오수발생으로 인한 수질변화 예상 • 운영시 생활오수 발생 예상

〈표 계속〉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사 유
나) 생활 환경의 안전성	환경 기준 부합성	대기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km 이내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 모델링 활용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 오염물질 발생
		악취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km 이내	• 악취 실측 • 현지조사	• 계획지구 주변 악취발생 원에 의한 계획지구 운 영시 악취영향 예상
		토양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 공사장비 폐유발생 등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
		소음 · 진동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 이내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거리감쇠식 등 활용	• 공사차량 및 운영시 차량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나) 생활 환경의 안전성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 경적 자원 순환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자료 • 발생원단위 적용	• 공사시 각종 폐기물 발생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온실 가스	• 계획지구 내	• 문헌자료 • 설계보고서 활용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배출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설계보고서 활용	• 편입용지 및 지장물 발생
	인구·주거		• 계획지구	• 문헌자료 • 설계보고서 활용	• 운영시 인구·주거 변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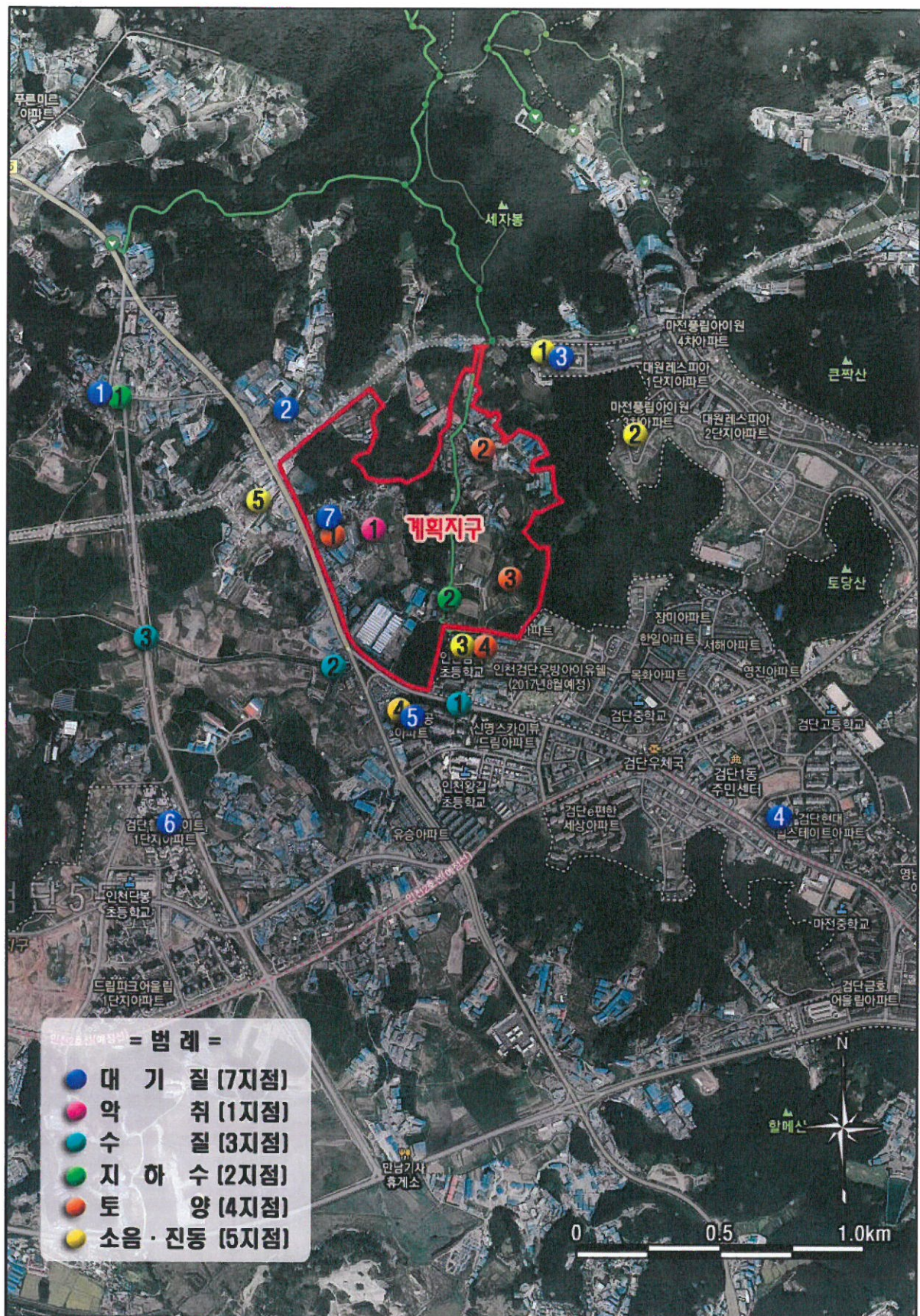
3.2 평가항목별 환경질 조사 계획

◦ 평가항목별 환경질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이 선정토록 함.

〈표 3.2-1〉 환경질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

구 분	지점수		항 목	조사시기	비 고
대기질	총 7지점	6지점	• PM-10, PM-2.5, SO ₂ , NO ₂ , CO, O ₃ , Pb, 벤젠	2017. 04. ~ 05. (봄)	8개 항목
		1지점	• PM-10, PM-2.5, SO ₂ , NO ₂ , CO, O ₃ , Pb,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사염화탄소		16개 항목
악 취	1지점		• 복합악취 • 지정악취 -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타이렌,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뷰티르아세테이트, 프로피온산, n-뷰티르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i-뷰티르알코올	2017. 04. ~ 05. (봄)	23개 항목 (복합악취 포함)
수 질	3지점		• pH, BOD, DO, SS, 대장균군수, Cr ⁶⁺ , Cd, Pb, As, CN, Hg, PCB, 유기인, 음이온계면활성제, TOC, T-P	2017. 04. ~ 05. (봄)	16개 항목
지 하 수 질	2지점		• pH, 암모니아성질소(NH ₃ -N), 질산성질소(NO ₃ -N), KMnO ₄ 소비량, 비소(As), CN, Cr ⁶⁺ , F, Cu, Zn, Fe, Cd, Pb, Hg, 총경도, Cl ⁻ , 색도,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군수, Mn, Al, 증발잔류물, 페놀	2017. 04. ~ 05. (봄)	24개 항목
토 양	4지점		• pH, Cd, Cu, Pb, Zn, Ni, Cr ⁶⁺ , As, Hg, F, CN, Phenol, PCB, 유기인, TCE, PCE,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벤조(a)피렌	2017. 04. ~ 05. (봄)	21개 항목
소 음 · 진 동	5지점		• 소음, 진동 - 소음 : 주간 4회, 야간 2회 - 진동 : 주간 2회, 야간 1회	2017. 04. ~ 05. (봄)	2개 항목

주)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추후 환경영향평가지와 연계하여 계절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그림 3.2-1) 환경질 조사지점도

제4장 대안의 설정

4.1 대안의 설정

- 본 사업의 대안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1호)”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2015.12)”에 의거,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검토할 대안의 종류는 계획비교, 수단·방법, 입지 3개의 대안을 선정하였음.

〈표 4.1-1〉 대안의 설정

대안종류	대안 설정
계획비교	- 대안1 : 본 행정계획을 수립(Action) - 대안2 : 현 상황을 유지(No Action)
수단·방법	- 대안1 : 주거용지 52.6%, 상업용지 4.5%, 도시기반시설용지 42.3%, 기타시설용지 0.6% - 대안2 : 주거용지 67.1%, 도시기반시설용지 32.2%, 기타시설용지 0.7%
입 지	- 대안1 : 565,477㎡ - 대안2 : 635,493㎡

4.2 대안별 종류 선정 및 비교

4.2.1 계획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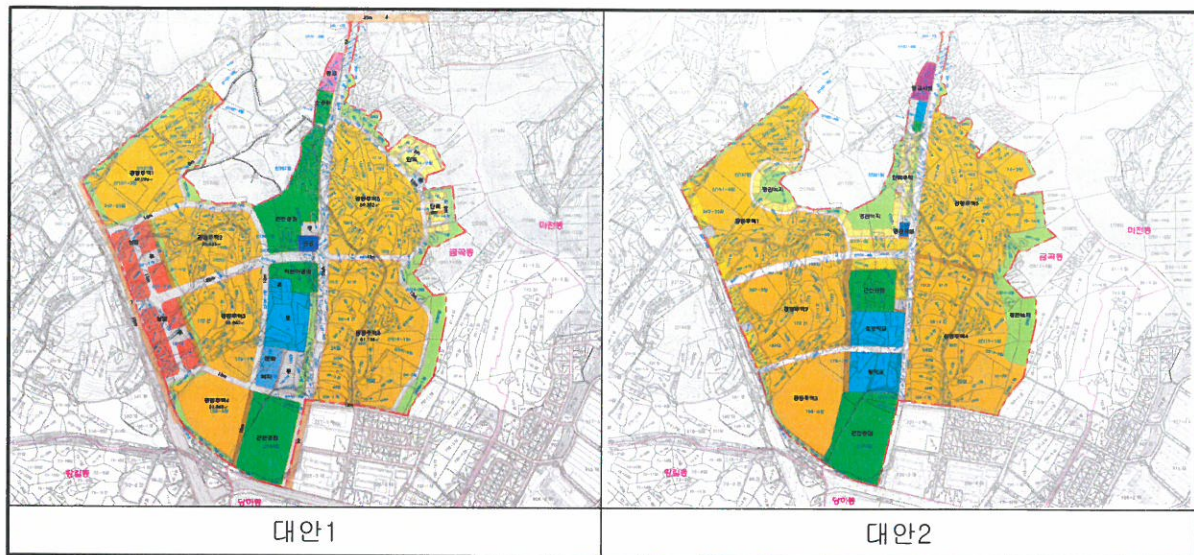
〈표 4.2.1-1〉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 설정

구 분	대안1(Action)	대안2(No Action)
장 점	- 상위계획 및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며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지역적 입지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및 미래 지향적인 도시공간 조성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측면에서 환경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자연환경적으로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단 점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소음, 온실가스 발생 등 생활환경 영향 예상 - 일부 지형변화 및 경관 영향 예상	- 공장과 주택들에 의해 난개발되고 슬럼화 진행 중 - 도시기반시설 부족 - 필지단위 개발에 따른 비정형적 개발과 도시경관 저해
선정안	○	

4.2.2 수단 · 방법

〈표 4.2.2-1〉 수단 · 방법에 대한 대안별 비교 ·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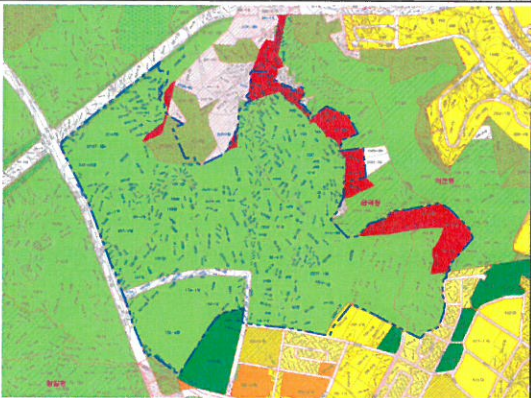
구 분	대안1	대안2																																																																																																						
개 요	• 면적 : 565,477㎡ • 인구 : 13,288인 (235인/ha) • 세대 : 5,446세대 (2.44인/세대)	• 면적 : 565,477㎡ • 인구 : 13,288인 (235인/ha) • 세대 : 5,446세대 (2.44인/세대)																																																																																																						
장 점	• 외부 이용권을 고려 상업용지를 간선도로 변으로 배치 • 생활권 중심부에 학교, 공원 배치, 접근성 고려 • 대상지 내부 양호한 환경지역에 단독주택배치 • 공동주택과 상업용지를 도로와 완충녹지로 구분하여 양호한 생활환경 조성 • 구역 외 기존도로망과 연계 고려	• 구역 내·외 인구의 이용을 고려 준주거용지를 간선도로변과 내측에 분포 • 생활권 중심부에 학교, 공원 배치																																																																																																						
단 점	• 상업지역과 공동주택 이용자간의 중첩으로 교통 혼잡 우려	• 준주거(근린상업)지역에 인접하여 단독주택 배치로 양호한 생활환경 침해 우려 • 준주거와 공동주택의 인접배치로 공동주택의 생활환경 침해 우려 • 중심부 근린공원 접근성 부족																																																																																																						
토 지 이 용 계 획	<table> <tr> <th>구 분</th><th>면적(㎡)</th><th>비율(%)</th></tr> <tr> <td>합 계</td><td>565,477</td><td>100.0</td></tr> <tr> <td>주거용지</td><td>297,669</td><td>52.6</td></tr> <tr> <td> 단독주택용지</td><td>11,856</td><td>2.1</td></tr> <tr> <td> 공동주택용지</td><td>285,813</td><td>50.</td></tr> <tr> <td>상업용지</td><td>25,701</td><td>4.5</td></tr> <tr> <td> 일반상업</td><td>25,701</td><td>4.5</td></tr> <tr> <td>도시기반시설용지</td><td>238,807</td><td>42.3</td></tr> <tr> <td> 도 로</td><td>83,338</td><td>14.7</td></tr> <tr> <td> 보행자도로</td><td>5,832</td><td>1.0</td></tr> <tr> <td> 주차장</td><td>10,582</td><td>1.9</td></tr> <tr> <td> 공 원</td><td>63,288</td><td>11.2</td></tr> <tr> <td> 녹 지</td><td>51,362</td><td>9.1</td></tr> <tr> <td> 교육시설</td><td>17,000</td><td>3.0</td></tr> <tr> <td> 공공청사</td><td>2,000</td><td>0.4</td></tr> <tr> <td> 문화시설</td><td>2,796</td><td>0.5</td></tr> <tr> <td> 복지시설</td><td>2,609</td><td>0.5</td></tr> <tr> <td> 기타시설용지</td><td>3,300</td><td>0.6</td></tr> <tr> <td> 종교시설</td><td>3,300</td><td>0.6</td></tr> </table>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565,477	100.0	주거용지	297,669	52.6	단독주택용지	11,856	2.1	공동주택용지	285,813	50.	상업용지	25,701	4.5	일반상업	25,701	4.5	도시기반시설용지	238,807	42.3	도 로	83,338	14.7	보행자도로	5,832	1.0	주차장	10,582	1.9	공 원	63,288	11.2	녹 지	51,362	9.1	교육시설	17,000	3.0	공공청사	2,000	0.4	문화시설	2,796	0.5	복지시설	2,609	0.5	기타시설용지	3,300	0.6	종교시설	3,300	0.6	<table> <tr> <th>구 분</th><th>면적(㎡)</th><th>비율(%)</th></tr> <tr> <td>합 계</td><td>565,477</td><td>100.0</td></tr> <tr> <td>주거용지</td><td>379,658</td><td>67.1</td></tr> <tr> <td> 단독주택용지</td><td>13,782</td><td>2.4</td></tr> <tr> <td> 공동주택용지</td><td>341,495</td><td>60.4</td></tr> <tr> <td> 준주거용지</td><td>24,381</td><td>4.3</td></tr> <tr> <td>도시기반시설용지</td><td>181,963</td><td>32.2</td></tr> <tr> <td> 도 로</td><td>49,083</td><td>8.6</td></tr> <tr> <td> 주차장</td><td>4,094</td><td>0.7</td></tr> <tr> <td> 공 원</td><td>45,722</td><td>8.1</td></tr> <tr> <td> 녹 지</td><td>54,801</td><td>9.7</td></tr> <tr> <td> 교육시설</td><td>27,432</td><td>4.9</td></tr> <tr> <td> 공공청사</td><td>876</td><td>0.2</td></tr> <tr> <td> 기타시설용지</td><td>3,856</td><td>0.7</td></tr> <tr> <td> 종교시설</td><td>3,856</td><td>0.7</td></tr> </table>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565,477	100.0	주거용지	379,658	67.1	단독주택용지	13,782	2.4	공동주택용지	341,495	60.4	준주거용지	24,381	4.3	도시기반시설용지	181,963	32.2	도 로	49,083	8.6	주차장	4,094	0.7	공 원	45,722	8.1	녹 지	54,801	9.7	교육시설	27,432	4.9	공공청사	876	0.2	기타시설용지	3,856	0.7	종교시설	3,856	0.7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565,477	100.0																																																																																																						
주거용지	297,669	52.6																																																																																																						
단독주택용지	11,856	2.1																																																																																																						
공동주택용지	285,813	50.																																																																																																						
상업용지	25,701	4.5																																																																																																						
일반상업	25,701	4.5																																																																																																						
도시기반시설용지	238,807	42.3																																																																																																						
도 로	83,338	14.7																																																																																																						
보행자도로	5,832	1.0																																																																																																						
주차장	10,582	1.9																																																																																																						
공 원	63,288	11.2																																																																																																						
녹 지	51,362	9.1																																																																																																						
교육시설	17,000	3.0																																																																																																						
공공청사	2,000	0.4																																																																																																						
문화시설	2,796	0.5																																																																																																						
복지시설	2,609	0.5																																																																																																						
기타시설용지	3,300	0.6																																																																																																						
종교시설	3,300	0.6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565,477	100.0																																																																																																						
주거용지	379,658	67.1																																																																																																						
단독주택용지	13,782	2.4																																																																																																						
공동주택용지	341,495	60.4																																																																																																						
준주거용지	24,381	4.3																																																																																																						
도시기반시설용지	181,963	32.2																																																																																																						
도 로	49,083	8.6																																																																																																						
주차장	4,094	0.7																																																																																																						
공 원	45,722	8.1																																																																																																						
녹 지	54,801	9.7																																																																																																						
교육시설	27,432	4.9																																																																																																						
공공청사	876	0.2																																																																																																						
기타시설용지	3,856	0.7																																																																																																						
종교시설	3,856	0.7																																																																																																						
선정안	○																																																																																																							



(그림 4.2.2-1) 대안별 토지이용계획도

4.2.3 입지

〈표 4.2.3-1〉 입지에 따른 대안검토

구 분	대안1	대안2
개 요	• 동측 군부대 제척, 남측 금곡공원 포함, 북측 광로 3-24호선과의 연결도로 포함. • 구역면적 : 565,477㎡ 	• 동측 군부대 포함, 남측 금곡공원 제척, 북측 광로 3-24호선과의 연결도로 미포함. • 구역면적 : 635,493㎡ 
장 점	• 계획지구 동측 한남정맥이 계획지구 내부에 포함되지 않음. • 계획지구 남측 미조성된 금곡공원을 포함하여 정비계획	• 군부대 포함으로 주거지역에서 군부대 이전 • 계획지구 북측 보전관리지역 일부 포함.
단 점	• 계획지구 동측 주거지에 인접하여 군부대 존치로 주거환경 침해 우려	• 계획지구 동측 한남정맥이 군부대 부지에 포함됨. • 구역 남측 미조성된 금곡공원이 제척되어 사업 후에도 미조성 상태로 남음. • 계획지구 북측 보전관리지역이 일부 포함.
선정안	○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5.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계획

- 공고시점 : 초안보고서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 공고장소 : 전국일간신문, 지역일간신문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기간 : 20일 이상 40일 이내(공휴일 제외)
- 공고내용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른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 공고 및 공람의 내용, 보고서 초안 및 초안 요약문 게시
 - 관계행정기관(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 초안서 및 주민의견서 비치장소
 - 인천광역시(개발계획과)
 - 관련 주민센터

5.2 관계기관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청, 서구청,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보고서(초안)를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5.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5.3.1 주민설명회

- 개최시점 : 공람기간 중 1회 실시
- 개최장소 : 차후 적절한 장소를 결정하여 공고할 계획
- 개최공고 : 설명회 개최 7일전 전국일간신문, 지역일간신문에 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할 계획임.
- ※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5.3.2 주민공청회

- 개최시점 : 주민의 개최 필요의견 제출시
 - 개최 필요 의견 제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개최 필요 의견 제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 개최장소 : 차후 적절한 장소를 결정하여 공고할 계획
- 개최공고 : 개최 14일 전까지 전국일간신문, 지역일간신문에 공고 할 계획임.
- 공고내용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일 시 : 2017. 03. 16 ~ 03. 26
- 방 법 : 서면심의
- 운영위원 : 위원장 포함 10인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과장	유호상	-
위 원	한강유역환경청	팀장	하은숙	-
"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자연환경팀장	민경석	-
"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여운호	-
"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경두	-
"	한국환경기술사회	(주)동림피엔디 대표	박민대	-
"	서구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장	황인근	-
"	금곡동 주민	검단1동 통장	채충희	-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
"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

6.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내용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토록 할 계획임.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유호상	☐ 총괄의견	• 금곡구역은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 구역으로 도시의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지 및 주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영향평가보고서 작성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한 구역 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포함 검토	-
	2. 토지이용 구상안	• 검단5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고려한 일조권, 조망권 수립 등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충고 및 건축물 배치 계획 등) 마련	-
	3. 대안	• 선택한 대안에 대해 향후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나은 최적의 (안)을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공사 진행 중 비산먼지,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등 환경영향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륜기 설치 등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주민 공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하은숙	□ 총괄의견	• 동 사업계획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158-6번지 일원에 도시 개발사업(면적: 565,477㎡)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지구 주변으로 다수의 택지와 산업단지가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이며 소규모 공장 등이 산재하고 한남정맥과 인접하여 위치하므로 평가범위를 확대하여 환경적 영향을 예측 후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정 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한 계획적·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의 설정은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경관 훼손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동 사업구역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그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부지 및 주변의 정온시설 분포현황, 지형, 공사차량 진·출입로와 그 주변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최대한 확대·설정	-
	2. 토지이용구상안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구상안을 마련하여야 함	-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고 경관영향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
		- 생태면적을 적용 지침(환경부, 2016)을 참조하여 생태면적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
	3. 대안	• 입지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대안설정이 필요하며, 대안별 입지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식물조사는 계절특성을 반영하여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시기, 조사 횟수, 범위 등을 선정하여야 함	-
		• 대기질(악취 포함) 및 소음·진동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 및 주변 정온시설(학교, 주거시설 등), 개발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목별 평가범위를 재설정하여야 함	-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하은숙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사업부지 주변 정온시설 현황(이격거리 등)을 누락되지 않게 정확히 파악하고 영향예측 결과를 면밀히 분석·제시	-
		- 계획지역 주변에 이미 입지한 시설(운영 또는 운영계획 중인 산업단지, 택지 등, 공사 중이거나 운영계획이 확정된 사업 포함)의 누적영향을 예측·평가	-
		• 계획지역 하류 수계현황(이용현황, 수질상태, 유량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평가대상범위(직·간접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
		• 사업지구내, 주변지역 주요 조망점(도로 등)에서의 경관영향분석(경관시뮬레이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한남정맥 전체의 스카이라인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 수립	-
		• 환경기초시설의 공급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처리 등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 계획 시행에 따른 급수계획 및 오수처리계획(발생량, 처리기준·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	-
		• 건강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주변에 다수의 공장, 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부지 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동 계획의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하여야 함	-
		• 계획 추진의 목적, 배경, 추진경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민경석	□ 총괄의견	•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일원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계획지구 동측으로 한남정맥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며,	-
		• 또한 사업부지 주변에 수도권매립지, 산단 등이 조성되어 있어 사업부지에 미치는 대기질(악취포함) 영향을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마련 할 필요가 있고, 봉수대로와 접하고 있는 주거용지는 먼지, 소음 피해 영향이 예상되므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확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계획지구 동측으로 한남정맥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므로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해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5km까지 동물·식물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2. 토지이용 구상안	• 본 계획지구 내에는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려가 필요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이 조성시 인근 지역의 지형, 녹지축, 스카이라인, 조망권, 경관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들의 배치를 하여야 함.	-
		• 봉수대로와 접하고 있는 사업지구의 경우 완충녹지를 10~15m로 계획하였으나 30m이상 확보 및 마운딩(2m 이상)을 실시하고, 방음터널 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 먼지, 소음 피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3. 대안	• 현재 상황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해결책으로 3개 이상의 대안(No Action 포함)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사업부지 주변에 인접한 주요시설(수도권매립지, 검단산단, 양촌산단, 학운산단 등)으로 인해 사업부지에 미치는 대기질(악취포함) 영향을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 토양조사의 경우 사업지구 내에 공장이 밀집되어 운영된 점을 감안할 때 공장 지역을 중심으로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조사가 필요함.	-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민경석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수렴 공고·공람 및 설명회시 동 사업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과 공청회 개최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6. 기타	• 평가서 초안요약서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황도면,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고 가급적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함	-
여운호	☐ 총괄의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되었으나 공사 및 운영 시에 폐기물 발생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항목이 없으면서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p18 [<표 2.1-1>(계속) 환경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중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에서 공사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누락되었기에 이것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면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2.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절	-
	3. 대안	• 적절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p94 [<표6.1-1>(계속) 평가항목의 설정] 중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에서 공사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누락되었기에 이것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되면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적절	-
조경두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적절	-
	☐ 총괄의견	• 인천지역 중심녹지축인 한남정맥과 근접한 지역의 개발사업이며 인근지역의 다양한 산업입지와 주거의 혼재상황, 다양한 신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여건을 감안하여, 누적영향에 대한 평가와 대상지역과 인근지역의 환경영향 유발요인에 대한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분석 및 예측평가가 진행되어야 함.	-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조경두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인천의 중심녹지축인 한남정맥 계양산~가현산 구간의 개발사업으로, 이에 대한 영향분석과 저감방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확대하여 검토바람.	-
		• 인근 산업단지와 개별입지공장 등에 의한 대기 등의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계획지구 중심으로부터 1.0km 이내인 평가대상지역은 부적절함. 이를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2~3km까지로 확대하고 주변지역의 누적영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3쪽의 계획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2. 토지이용 구상안	• 83쪽과 연계, 군부대 존치에 따른 대상지역 내 토지이용계획과의 상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 31쪽의 공원녹지계획과 관련, 완충녹지의 대상지역에서의 적정성을 객관적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해주기 바람.	-
	3. 대안	• 83쪽 입지에 대한 대안검토와 관련, 미조성된 공원을 포함하여 사업지구 내 녹지조성의무를 충족한 대안1과 군부대의 녹지공간을 포함하는 대안2 모두 현실적으로 검토가능한 대안인지에 대한 설명과 보완조치를 요청함.	-
		• 74쪽의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2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인지 확인이 필요함. 또한 동일한 계획인구와 세대계획에도 불구하고, 시설용지가 상이한 이유를 설명하고, 대안1의 단점과 대안2의 장점에 대한 설명을 보완바람. 이러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만, 대안2의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모두 동일한 검토결과 "-"와 검토내용 및 근거 "좌동"을 판단할 수 있음.	-
	4. 평가 항목· 범위·방법 등	• 93쪽, 수리·수문에 대한 포괄적 검토는 생략될 수 있겠으나, 사업 이전의 우수배제 현황과 사업 후 변화 및 저감방안에 대한 검토는 필요함.	-
		• 94쪽, 국지적 기상특성에 대한 검토없이 대기질에 대한 영향분석과 저감방안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음. 또한 기존 토지이용을 감안하여, 토양 및 지하수의 평가항목 포함여부를 판단해주기 바람.	-
		• 96쪽, 환경질 조사시기와 횟수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조경두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의견 없음	-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45쪽의 생태자연도에 대한 설명과 범례로 표시하지 않은 지도상의 노란색 원표시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기 바람.	-
		• 51~55쪽 환경기준이 대상지역에서는 어떤 지역의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하여 설명바람.	-
		• 60쪽의 기타시설 현황과 관련, 인근 군부대의 경계구획, 허가 또는 미허가 공장시설과 야적·적치물 현황 등 대상지역과 인근지역에 위치하면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시설명세와 지도상의 위치표시를 보완하기 바람.	-
		• 69쪽 환경계획의 건전성과 70쪽 지속가능성과 부합성에 대한 대안1의 검토결과와 검토내용 및 근거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
		• 71쪽, 생태적 건전성에 대한 대안1의 검토결과와 검토내용 및 근거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 72쪽,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검토결과와 검토내용 및 근거에 대하여, 인근지역의 단기적인 대기환경기준 등의 충족실태를 고려할 때 동의하기 어려움.	-
박민대	☐ 총괄의견	• 전반적으로 작성규정의 내용이 반영되었음.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상수, 오수,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의 적정성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평가범위에 포함.	-
	2. 토지이용구상안	•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공원녹지검토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적정성 기준의 반영 검토	-
		• 사업지구 내부도로가 외분과 연결된 관통도로 기능이 부여될 경우 녹지 확보 반영 검토	-
		• 주변 산림지역과의 녹지 연결성을 고려하여 녹지계획 반영 검토	-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박민대	3. 대안	• No Action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Action과 비교하여 설명 필요	-
		• 토지이용관련 전략평가항목으로 비교검토가 가능한 배치대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모두 좌동이면 대안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주변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있는바, 시설을 확인하여 토양항목의 추가 여부 결정	-
		• 사업지구 주변의 주거시설에 대한 일조영향 여부를 판단하여 시설높이를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의견 없음	-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
황인근	☐ 총괄의견	• 주변 도시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최근 개발 현황을 반영하여 작성	-
		• 사업지구 주변 김포산업단지[양촌산단, 학운산단, 대포산단(예정)] 1km~2km내, 인천 식품단지(추진중) 1km내 위치하여 있는 환경여건을 감안하여 정온시설 입지 타당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 동 사업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뿐만 아니라 운영시 사업지구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추가 필요.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대상지역 확대 -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 계획지구 및 계획지구 장축의 2배 → 계획지구 및 지구경계로부터 3km이상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경관)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지구 및 지구경계로부터 3km이상 - 대기질, 악취 : 계획지구 중심으로부터 1km이내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km이내 - 온실가스, 토양 : 계획지구내 → 계획지구 및 계획지구 주변 지역 - 소음·진동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3km이내 → 계획지구 및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km이내	-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황인근	2. 토지이용 구상안	• 학교 및 북서방향 공동주택으로 계획된 지역은 산림의 직접적 훼손이 예상되는 바, 산림지역은 가급적 원형보전하는 방안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단독주택 계획지구 또한 한남정맥 주축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자연생태계 간섭을 최소화하는 배치계획 수립.	-
		• 아울러 북서방향 공동주택 토지이용계획은 김포산단 및 검단식품산단이 인접하여 있고 주풍인 북서풍의 영향으로 운영시 외부로부터 환경피해가 예상되므로 녹지는 원형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	-
	3. 대안	• 운영시 도로변 주변 정온시설 인접 지역 녹지 확보, 방음창, 방음벽 설치 등 도로교통소음 최소화 방안 수립	-
		• 공사시 분진·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수립	-
		• 주변 검단천 인접에 따라 토사, 유류 등 하천으로 오염물질 유입 예방을 위한 비점오염저감방안 강구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구역 확인	-
	4. 평가 항목· 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추가 : 생활환경안전성 분야에 악취, 토양, 일조영향,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대한 평가항목 추가	-
		• 운영단계 환경영향요소에 대하여 공사단계에도 적용하여,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환경저감방안 제시	-
		• 대기질, 악취, 동·식물상 항목은 계절적 특성을 반영(3계절)하고 그 외 항목은 2계절 이상 반영	-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 현황, 도시계획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시 누적평가 실시	-
		• 토양오염시설이 위치한 지점을 파악하여 해당지점을 토양환경 조사지점으로 조사	-
		• 소음·진동 조사지점 변경·확대 : 북서, 남서방향으로 사업지구 주변 도로변에 소음·진동 조사지점 추가 확대	-
		• 대기질 조사지점 확대 : 사업지구 서측 사거리(교차로) 경계로 인접 북측과 남측 지점의 대기질 조사지점 추가 확대	-
		• 악취 항목 추가 및 조사지점 : 운영시 사업지구 외부로부터 악취영향 예측 및 저감을 위해 대기질 조사지점을 포함하여 주변 악취영향 가능지점을 중심으로 악취 조사	-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황인근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문헌 등을 활용 할 경우 객관성이 확보된 최신 자료를 인용하여야 함.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관련법에 따라 의견 수렴시 환경영향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	-
채충희	☐ 총괄의견	• 본 사업지구는 한남정맥과 인접하고, 식생이 양호한 지역이 분포하므로 이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주변 지역 환경을 고려한 대기질, 악취, 토양 등에 대한 중점검토가 필요함.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지구 주변 산업단지(계획 추진 중인 사업 포함), 매립지 등으로 인한 사업지구 주거시설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를 위해 평가 대상지역 범위 확대 필요	-
	2.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지구는 한남정맥과 인접하여 토지이용(단독주택지 등)을 계획하고 있는 바, 산림지역은 가급적 원형보전하고, 인공시설로 인한 자연생태계 간섭 최소화를 위하여 한남정맥 주축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시설 배치 계획 수립 필요	-
		• 사업지구내 식생이 양호한 수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급적 기존 수목을 원형보전하는 토지이용 계획 필요	-
	3. 대안	• 상기 토지이용 구상안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대안 설정 필요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사업지구 주변은 서측으로 김포산업단지(양촌산단, 학운산단, 대포산단 등)가 완료, 진행중에 있고 인접하여 금곡동 인천식품 산업단지(I-Food Park)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남서측에 검단일반산업 단지 및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하여 운영시 사업지구 외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구 외부로 부터의 대기질 및 악취 등 영향을 검토하고 충분한 저감방안 수립 필요	-
		• 사업지구는 소규모 공장 등 산업시설이 산재된 지역으로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토양오염 조사 후 오염이 확인 될 경우 적절한 저감계획 수립 필요	-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채총희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주민등의 의견수렴 계획은 적정함	-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주변 산업단지(9계획 추진 중인 사업 포함), 매립지 등으로 인한 각종 환경영향(대기질, 악취, 소음 등)을 고려한 대규모 주거지 입지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박주희	☐ 총괄의견	• 본 사업계획지는 백두대간과 연결된, 인천내륙유일 녹지축인 한남정맥 유역이므로, 개발이 아닌 생태복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 더불어 한남정맥이 하천발원지인 만큼 수질만이 아닌 하천 관련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서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리에 멸종위기종 맹꽁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함. 또한 서구는 쓰레기매립지로 인해 각종 환경오염문제, 주민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지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음.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추가로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인천시 자연환경조사서에 따르면, 개발구역 1km 인근에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양서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공사시와 공사 후에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선행되어 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함.	-
		- 한남정맥이 하천발원지인 만큼 수질만이 아닌 하천 관련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2. 토지이용구상안	• 한남정맥은 검단신도시 등 도시개발로 단절, 훼손되었음. 초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져 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사업계획지도 훼손된 지역을 관리하고, 녹지로 복원해야 함.	-
	3. 대안	• 이미 인근지역은 검단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각종 아파트, 기반시설이 설치되었음. 이에 사업목적의 하나인 '기반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음. 또한 주택과 공장에 의해 난개발되고 있는 부분은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리하고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지, 도시개발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임.	-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박주희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의견 없음.	-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
조강희	□ 심의의견	• 개발구역 및 반경 1km 주변에 대해 생태자연도 조사를 단순히 환경부 환경지리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를 새롭게 실시하여 1등급 여부 및 멸종위기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 인근 수도권매립지등 악취관리지역이고, 양촌일반산업단지, 검단하수종말처리장등 대기와 악취오염에 취약한 지역임을 고려하여 악취조사의 정점을 늘리고, 범위도 확대하여 대기,악취 조사를 실시해야 함	-
		• 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과 하수처리량에 대해 예측하고, 자체처리등 방안을 제시하고 타 지역으로 위탁 처리시 관련 기관의협약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본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그린벨트 해제 규모를 제시하고, 전체 사업부지중 녹지, 공원 규모를 30% 이상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 인근에 금곡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청의 관련 협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통학로 및 일조권 문제등 교육환경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치기 바람	-
		• 기타 본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관련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기 바람	-

3. 대안

- 현재 상황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해결책으로 3개 이상의 대안(No Action 포함)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되 최종적으로 이행한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사업부지 주변에 입접한 주요시설(수도권배수지, 검단산단, 양촌산단, 학운산단 등)으로 인해 사업부지에 미치는 대기질(악취포함) 영향을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토양조사의 경우 사업지구 내에 공장이 난립되어 운영된 점을 감안할 때 공장 지역을 중심으로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조사가 필요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수렴 공고·공람 및 설명회시 등 사업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과 공영회 개최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6. 기 타

- 평가시 초안요약서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상도면,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고 가급적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함

2017. 3.

심의위원 민 경 석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계획명	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위치 및 규모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158-6 일원 ○ 면적: 565,477㎡

□ 총괄 의견

- 평가항목·범위·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되었으나 공사 및 운영 시에 폐기물 발생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이항목이 없으므로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p18 [〈표 2.1-1〉(계속)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중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에서 공사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누락되었기에 이것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면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2.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절

3. 대안

- 적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p94 [〈표 6.1-1〉(계속) 평가항목의 설정] 중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에서 공사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누락되었기에 이것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면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적절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적절

2017. 3. 27.

심의위원 여운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계획명	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위치 및 규모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158-6 일원 ○ 면적: 565,477㎡

□ 총괄 의견

- 인천지역 중심녹지축인 한남정맥과 근접한 지역의 개발사업이며 인근지역의 다양한 산업입지와 주거의 혼재상황, 다양한 신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여건을 감안하여, 누적영향에 대한 평가와 대상지역과 인근지역의 환경영향 유발요인에 대한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분석 및 예측평가가 진행되어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인천의 중심녹지축인 한남정맥 계양산-가현산 구간의 개발사업으로, 이에 대한 영향분석과 저감방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확대하여 검토바람.
 - 인근 산업단지와 개발입지공간 등에 의한 대기 등의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계획지구 중심으로부터 1.0km 이내인 평가대상지역은 부적합함. 이를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2-3km까지로 확대하고 주변지역의 누적영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3쪽의 계획목적에 충족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83쪽과 연계, 군부대 근처에 따른 대상지역 내 토지이용계획과의 상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31쪽의 공원녹지계획과 관련, 환경녹지의 대상지역에서의 적정성을 객관적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해주시기 바람.

3. 대안

- 83쪽 입지에 대한 대안검토와 관련, 미조성된 공원을 포함하여 사업지구 내 녹지조성 의무를 충족한 대안1과 군부대의 녹지공간을 포함하는 대안2 모두 현실적으로 검토가능한 대안인지에 대한 설명과 보완조치 필요함.
- 74쪽의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2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인지 확인이 필요함. 또한 동일한 계획인구와 세대계획에도 불구하고, 시설용지가 상이한 이유를 설명하고, 대안1의 단점과 대안2의 장점에 대한 설명을 보완바람. 이러한 사실검토가 선행되어야만, 대안2의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모두 동일한 검토결과와 "-"와 검토내용 및 근거 "파동"을 판단할 수 있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93쪽, 수리수문에 대한 포괄적 검토는 생각될 수 있겠으나, 사업 이전의 우수배제 현황과 사업 후 변화 및 저감방안에 대한 검토는 필요함.
- 94쪽, 국지적 기상특성에 대한 검토없이 대기권에 대한 영향분석과 저감방안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음. 또한 기존 토지이용을 감안하여, 토양 및 지하수의 평가항목 포함여부를 판단해주시기 바람.
- 96쪽, 환경질 조사시기와 횟수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45쪽의 생태자연도에 대한 설명과 별첨로 표시하지 않은 지도상의 노란색 원표시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기 바람.
- 51-55쪽 환경기준이 대상지역에서는 어떤 지역의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하여 설명바람.
- 60쪽의 기타시설 현황과 관련, 인근 군부대의 경계구획, 허가 또는 허가 공장시설과 아력·적지등 현황 등 대상지역과 인근지역에 위치하라는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시설명세와 지도상의 위치표시를 보완하기 바람.
- 69쪽 환경계획의 건전성과 70쪽 지속가능성과 부합성에 대한 대안1의 검토결과와 검토내용 및 근거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견이 제기될 수 있음.
- 71쪽, 생태적 건전성에 대한 대안1의 검토결과와 검토내용 및 근거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72쪽,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검토결과와 검토내용 및 근거에 대하여, 인근지역의 단기적인 대기환경기준 등의 충족상태를 고려할 때 동의하기 어려움.

2017. 3. 27.

심의위원 조 경 두

(2쪽 중 2쪽, 2면)

환경영향평가협의의 심의결과 통보서

계획명	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위치 및 규모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158-6 일원 ○ 면적: 565,477㎡

□ 총괄 의견

- 전반적으로 작성규정의 내용이 반영되었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상수, 오수,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의 적정성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평가범위에 포함.
2. 토지이용 구상인
 -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공헌특성도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적정성 기준의 반영 검토
 - 사업지구 내부도로가 외부와 연결된 관통도로 기능이 부여될 경우 녹지 확보 반영 검토
 - 주변 산림지역과의 녹지 연결성을 고려하여 녹지계획 반영 검토
3. 대안
 - No Action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Action과 비교하여 설명 필요
 - 토지이용관련 전략평가항목으로 비교검토가 가능한 배치대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모두 파종이면 대안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주변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있으나, 시설을 확인하여 토양오염의 추가 여부 결정
 - 사업지구 주변의 주거시설에 대한 인조영향 여부를 판단하여 시설높이를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17. 3. 17

심의위원 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의의 심의결과 통보서

계획명	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위치 및 규모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158-6 일원 ○ 면적: 565,477㎡

□ 총괄 의견

- 주변 도시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최근 개발 현황을 반영하여 작성
- 사업지구 주변 김포산업단지(양촌산단, 학운산단, 대포산단(예정)) 1km~2km내, 인천 식품단지(추진중) 1km내 위치하여 있는 환경여건을 감안하여 정온시설 입지 타당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동 사업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나 운영시 사업지구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추가 필요.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대상지역 확대
 -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계획지구및계획지구 장측의 2배 → 계획지구 및 지구 경계로부터 3km이상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경관):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지구 및 지구 경계로부터 3km이상
 - 대기질, 악취: 계획지구 중심으로부터 1km이내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km이내
 - 온실가스, 토양: 계획지구내 → 계획지구 및 계획지구 주변지역
 - 소음·진동: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3km이내 → 계획지구 및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km이내
2. 토지이용 구상인
 - 학교 및 복지생활 공동주택으로 계획된 지역은 산림의 직접적 훼손이 예상되는 바, 산림지역은 가급적 원형보전하는 방안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단독주택 계획지구 또한 한남정맥 주축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자연생태계 간섭을 최소화하는 배치계획 수립.
 - 아울러 복지생활 공동주택 토지이용계획은 김포산단 및 김포식품산단이 인접하여 있고 주종인 복서품의 영향으로 운영시 외부로부터 환경피해가 예상되므로 녹지는 원형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

3. 대안

- 운영시 도로변 주변 정온시설 인접 지역 녹지 확보, 방음장, 방음벽 설치 등 도로교통소음 최소화 방안 수립
- 공사시 분진·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을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수립
- 주변 집단천 인입에 따라 토사, 유류 등 하천으로 오염물질 유입 예방을 위한 비점오염원저감방안 강구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구역 확인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추가: 생활환경안전성 분야에 악취, 토양, 인조영향, 인공조명에의한 빛 공해에 대한 평가항목 추가
 - 운영단계 환경영향요소에 대하여 공사단계에도 적용하여, 공사사와 운영사로 구분하여 환경저감방안 제시
 - 대기질, 악취, 동·식물상 항목은 계절적 특성을 반영(3계절)하고 그 외 항목은 2계절 이상 반영.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 현황, 도시계획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시 누리평가 실시.
 - 토양오염시험이 취한 지점을 파악하여 해당지점을 토양환경조사지점으로 조사
 - 소음·진동 조사지점 변경·확대: 복사, 남서방향으로 사업지구 주변 도로변에 소음·진동 조사지점 추가 확대
 - 대기질 조사지점 확대: 사업지구 서측 사거리(교차로) 경계로 인접 북측과 남측 지점의 대기질 조사지점 추가 확대
 - 악취 항목 추가 및 조사지점: 운영시 사업지구 외부로부터 악취영향 예측 및 저감을 위해 대기질 조사지점을 포함하여 주변 악취영향 가능지점을 중심으로 악취 조사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문헌 등을 활용 할 경우 객관성이 확보된 최신 자료를 인용하여야 함.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련법에 따라 의견 수렴시 환경영향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

2017. 3. 27.

심의위원 황인근(인)

환경영향평가협의의 심의결과 통보서

계획명	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위치 및 규모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158-6 일원 ○ 면적: 565,477㎡

□ 총괄 의견

- 본 사업지구는 한남정맥에 인접하고, 식생이 양호한 지역이 분포하므로 이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주변지역 환경을 고려한 대기질, 악취, 토양 등에 대한 중립검토가 필요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지구 주변 산림지역(계획 추진 중인 사업 포함), 매립지 등으로 인한 사업지구 주거시설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를 위해 평가 대상지역 범위 확대 필요
2. 토지이용 구상인
 - 사업지구는 한남정맥에 인접하여 토지이용(단독주택 등)을 계획하고 있는 바, 산림지역은 가급적 원형보전하고, 인공시설로 인한 자연생태계 간섭 최소화를 위하여 한남정맥 주축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시설 배치 계획 수립 필요
 - 사업지구내 식생이 양호한 수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급적 기존 수목을 원형보전하는 토지이용 계획 필요
3. 대안
 - 상기 토지이용 구상인 의견 중 충분한 반영한 대안 설명 필요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사업지구 주변은 서측으로 김포산업단지(양촌산단, 학운산단, 대포산단 등)가 분포. 생활공해 있고 인접하여 금곡동 인천식품산업단지(Food Park)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남서측에 집단일원산업 단지 및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하여 운영시 사업지구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구 외부로부터의 대기질 및 악취 등 영향을 검토하고 충분한 저감방안 수립 필요
 - 사업지구는 소규모 공장 등 산업시설이 산재한 지역으로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토양오염 조사 후 오염이 확인 될 경우 적절한 저감방안 수립 필요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들의 의견수렴 계획은 적정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주변 산림지역(계획 추진 중인 사업 포함), 매립지 등으로 인한 각종 환경영향(대기질, 악취, 소음 등)을 고려한 대규모 주거지 입지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2017. 3. 26.

심의위원 조희영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 총괄의견 ○ 본 사업계획서는 매도대간과 연결된, 인천내륙유원 녹지축인 원님곶역 유역이므로, 개발이 아닌 생태보전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 더불어 한남정맥이 하천밀원지인 만큼 수질만이 아닌 하천 권역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식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리에 멸종위기종 병풍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함. 또한 서구는 쓰레기매립지로 인해 각종 환경오염문제, 주민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지 인근에는 산입단지가 형성해 있음.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추가로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절성 － 인천시 자연환경조사가치에 따르면, 개발구역 1km 인근에 멸종위기종 병풍이가 살 양서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공사시와 공사 후에 멸종위기종 병풍이가 서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선행되어 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함. － 한남정맥이 하천밀원지인 만큼 수질만이 아닌 하천 권역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한남정맥은 김단신도시 등 도시개발로 단절, 훼손되었음. 초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져 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사업계획지도 훼손된 지역을 관리하고, 녹지로 복원해야 함. 3. 대안 ○ 이미 인근지역은 김단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각종 아파트, 기반시설이 설치되었음. 이에 사업목적의 하나인 '기반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음. 또한 주택가 공장에 의해 난개발되고 있는 부분은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정리하고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지, 도시개발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임. 4. 평가 항목별영향방법 등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2017년 3월 27일 심의위원 박주희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 심 의 의 건 ○ 개발구역 및 반경 1km 주변에 대해 생태자연도 조사를 단순히 환경부 환경지리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를 새롭게 실시하여 1등급 여부 및 멸종위기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인근 수도권매립지등 악취관리지역이고, 양촌일반산업단지, 김단하수종말처리장등 대기과 악취오염에 취약한 지역임을 고려하여 악취조사의 정밀을 높이고, 병풍도 확대하여 대기,악취 조사를 실시해야 함 ○ 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과 하수처리량에 대해 예측하고, 자체처리등 방안을 제시하고 타 지역으로 위탁 처리시 관련 기관의 협위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본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그린벨트 해제 규모를 제시하고, 전체 사업부지중 녹지, 공원 규모를 30% 이상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인근에 금곡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청의 관련 협위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통학로 및 일조권 문제등 교육환경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치기 바람 ○ 기타 본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관련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기 바람 2017. 3 . 심의위원 조강희 (인)	